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심사의 효율화 및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 절차를 변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증 심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가 2022년 수립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비상설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받으면”을 “받으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로,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해야”를 “구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및 제8항(중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인증기관의 서류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인증 여부 및 등급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

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인증심의위원회”를 각각 “인증운영위원회”로 한다.

①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4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8제1항 전단 중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별표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별표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절차 및 방법) ①·② (생략)	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절차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u>받으면</u> 제13조의 7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전문인력 중에서 5명 이내의 사람으로 인증심사단을 <u>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u>	③ ----- ----- <u>받으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u> ----- ----- ----- <u>구성하여야</u> ----- ----- ----- ----- ----- ----- ----- ----- -----.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u>인증기관의 서류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인증 여부 및 등급을 심사하여야 한다.</u>
<신 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 제13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신청인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 및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7(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

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 제6항-----

-----.

⑧ ----- 제6항-----

-----.

⑨ -----
---- 제8항-----

-----.

제13조의7(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

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3. (생략)

④ ~ ⑥ (생략)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의위원회 및 인증심사 전문인력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4(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인증운영위원회-----

-----.

③ 인증운영위원회-----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인증운영위원회 -----

-----.

제16조의4(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u>한다.</u> ⑥ (생 략) 제16조의8(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u>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u> 하되, <u>국토교통부장관</u>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 ⑧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 ----- <u>국토교통부장관</u> ----- -----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	--